

[공고 제2018-53호]

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처리 공고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·거주불명등록 할 것을 신청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, 제11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.

2018. 09. 10.

다 산 동 장



대 상 자			세대주 성명	처리사항	처리일자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		
윤**	1968.05.28.	중구 동호로11바길	윤**	신고거주불명등록	2018.09.10.

※ 재등록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)

담당자 : 이민영 (☎ 02-3396-6748)